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2차 모집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관리기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예산규모) 613억원
-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관리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운영기관)

구분	운영기관
컨설팅, 마케팅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기술지원, 마케팅	(사)한국산학연합회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사업내용)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각 바우처별 서비스 제공분야 및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2. 수행기관 자격

- (수행기관 정의) 관리기관이 일정한 자격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기업 또는 기관으로서, 수요기업에게 서비스를 신청받아 제공하는 기관
- (신청자격)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각 분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기업 또는 기관
 - * 단일 사업체만 지원가능(두 개 이상의 사업체 컨소시엄 신청 불가)
- (자격기간) 수행기관 선정후 선정년도 포함 **2개년도*** 사업수행
 - * 선정년도(25년)와 차년도(26년) 사업, [5. 사업수행 신청 시 유의사항의 ①번 필수 참조
- (신청제한) 아래의 신청 제외 대상은 신청 불가

신청 제외 대상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공공정보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기관) (정부·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제재중인 기업(기관))
- ◆ 휴·폐업중인 기업
-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원사업에서 제재 받은 기업(기관)
- ◆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기관)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기관)
- ◆ 실적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취급확인이 불가능한 기업(기관)
- ◆ 신청한 분야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요기업 또는 운영기관으로 참가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관리지침 제37조에 의거, 수행기관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제한 가능

3. 수행기관 신청

□ (신청구분) 패스트트랙 또는 일반트랙中 1개 선택하여 신청

○ 패스트트랙* : 수요기업('25년 선정)이 있는 경우

* '25년 선정된 수요기업이 작성한 수요의향서 필수 제출 (미제출시 신청 불가)

○ 일반트랙 : 그 외의 경우

□ (신청분야)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2개 프로그램

【 일반·지역자율형 바우처 분야별 세부지원 프로그램 】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컨설팅	경영기술 전략	-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융복합 등 -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기술 지원	AX:DX 추진전략	- 스마트공장 진단 및 AX:DX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시스템 및 시설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
	IP기반 기술사업화	-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문비 및 수행대행비 지원 -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분쟁대응 포함) - 지재권 진단, 신제품 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제품시험인증 연구장비활용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등 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마케팅	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브랜드 지원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홍보물 제작	기업·제품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브로슈어, 카탈로그,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광고 지원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 (온라인 광고, 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등)

※ 컨설팅 및 마케팅 분야 지원시, 신청자격 확인 및 서류 제출 필수

분야	프로그램	요건	발급기관
컨설팅	전체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에 해당분야 '서비스업'	세무서
마케팅	브랜드지원, 디자인개선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정하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된 기업(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홍보물제작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 관련 분야) 홈페이지 제작은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로 대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중대재해예방bauer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컨설팅 (필수)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화학물질관리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전략수립
기술 지원 (선택)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시스템 및 시설 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 공정, 생산라인),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
	IP기반 기술사업화	-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문비 및 수행대행비 지원 -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분쟁대응 포함) - 지재권 진단, 신제품 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제품 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탄소bauer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컨설팅 (필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 탄소수준진단 : 에너지사용 현황 분석, 탄소역량강화 교육 등 - 심층컨설팅 : 공정개선 및 공정효율화, 탄소저감 목표설정
기술 지원 (선택)	시제품 제작(탄소)	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설계 구축 지원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 환경 경영체제,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제품이 친환경, 신에너지원, 효율향상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 (모집일정) 일정은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회차	신청기간	사업수행 년도
2차	'25. 04. 10(목) ~ 04. 23(수) 18:00	2025년, 2026년

* 3차 모집은 10월경 예정, 추후 일정은 혁신bauer 플랫폼 공지 참고

- 접수기간 내 제출완료한 기업만 인정하며 추가접수나 예외사항 허용 불가 (평가기관에 의한 별도의 보완 요청 없음)

- (신청방법)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 신청방법 : www.mssmiv.com → 회원가입 → 로그인 → 수행기관 신청 →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수행기관 신청 접수

☞ 반드시 "신청" 버튼 클릭 후 신청결과 최종 확인 요망(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번호가 있더라도 임시저장 상태일 경우에는 평가 불가)

* 수행기관 신청 매뉴얼 참조

** 수행기관은 법인 기준이 아닌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본점과 지점 별도 신청(必)

- (제출서류) 구비서류*를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플랫폼에 제출

【 수행기관 신청·접수시, 구비서류 목록 】

No	서류명	내용/발급기관		비고
①	수행기관 신청서 및 윤리강령 서약서	온라인 작성		필수
②	개인 및 기업 정보활용동의서	온라인 동의 또는[제출서류 6] 서식		
③	수행기관 서비스 수행계획	[제출서류 2] 서식		
④	참여인력 이력사항	[제출서류 3] 서식		
⑤	수행인력 보안각서 및 정보활용동의서	[제출서류 4]서식(수행인력 전원)		
⑥	사업실적증명서	[제출서류 7] 서식 및 세금계산서		
⑦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포함)]	국세청 및 등기소 확인본(1개월 이내 발급)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기업		
⑨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1개월 이내 발급 (제출일 기준)	
⑩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⑪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⑫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불가 업체		해당시
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제출불가 기업		
⑭	수요의향서	최종 선정된 수요기업의 수요의향서		
⑮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유효기간 내 (제출일 1개월 이내 발급)		
⑯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해당분야, 유효기간 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유효기간 내 (제출일 1개월 이내 발급)		

* 수행기관 신청서류 누락 시 항목별 최하점 부여. 단, 신청자격 확인서류(연번 ①~③, ⑤~⑧, ⑮~⑯) 미제출 시 신청 및 선정 불가(※별도 보완요청 없음)

○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 ②) 신청서·윤리강령서약서, 기업 및 개인 정보활용동의서 : 혁신
 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윤리강령서약·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 대표자 공인인증서 사용시 **온라인 동의 가능**하며, 불가능시 신청서류[제출서류 6]를
 작성하여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및 선정후 원본서류 우편 제출 필수(**분야별 제출**)
 - ** 공동대표, 각자대표일 경우 모두 대표자인증 필요
- (③) 서비스수행계획서 : 프로그램별 서비스수행계획서 각1부씩 작성
- (④, ⑩) 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경력증명서 : 소속 상근직원이어야 하며,
 ④학력·전문자격의 경우 신청분야 관련 개인별 학위(졸업)증명서(석사
 이상) 및 전문자격증 사본 제출, ⑩국민연금가입증명서 제출
- (⑤) 수행인력 보안각서 및 정보활용동의서 : 수행인력 전원 보안
 각서 서명 및 수행 인력별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 (⑥) 사업실적증명서 : 최근 3년 이내('22년~'24년) 수행한 사업실적
 증명서(제출서류 7)와 (전자)세금계산서 함께 제출
 - * 사업실적증명서 제출 불가 시,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함께 제출해야하며,
 계약처, 금액, 기간과 더불어 지원프로그램 내용이 확인가능토록 제출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상기 대체 제출원칙은 본 제출원칙과 동일 적용)
 - ** 동일분야 다수프로그램 신청시, 지원프로그램이 확인가능토록 파일명 기재 필요
 - *** 공고문 상에 명시된 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 실적인정 불가
- (⑦, ⑧) 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기업)
 - * (개인)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등기부등본 모두 제출
 - ** (개인)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⑨) 표준재무제표 : 최근 3년 이내('21년~'23년) 국세청 발급 서류
 - *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기업(또는 개인 기업)의 경우 발급가능한 최근 3년간 표준
 재무제표증명원 제출시 인정
 - ** 표준재무제표 제출불가의 경우 ⑫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해야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불가시 매출증빙자료와 소명 공문 제출
- (⑪, ⑬)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제출불가*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서' 대체 제출
 - * 300인 초과 사업장으로 발급 불가할 경우, 가장 최신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 법인일 경우, 법인용으로 제출

- (14) 수요의향서 양식[제출서류 8]에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에 최종선정된 수요 기업의 날인을 받아 제출
- (15)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은 마케팅분야 디자인개선·브랜드지원 신청시 제출
- (16)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마케팅분야 홍보물제작 신청시 제출 (홈페이지 제작의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자신고확인서로 대체 가능)

4. 수행기관 평가

□ (평가기간) 패스트트랙과 일반으로 구분하여 진행

- 서류 평가에 통과된 기업만 발표평가 진행하며 결과는 개별 통보

분야	회차	구분	서류 및 발표평가	결과발표(예정)**
컨설팅 마케팅 기술지원	2차	패스트트랙*	'25. 4. 24 ~ '25. 4. 29	'25. 4. 30.(수)
		일반	'25. 5. 1 ~ '25. 5. 13	'25. 5. 14.(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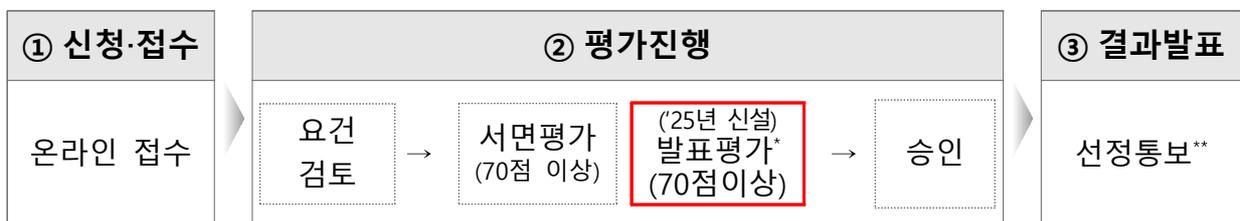
* 패스트트랙은 수요기업('25년 선정)의 수요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만 해당됨

** 결과발표는 예정일로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항목) 서비스 품질의 적절성,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등 평가

- 절대평가로 진행, 수행기관 선정지표 및 배점기준은 [붙임2] 참고

□ (선정절차) 신청·접수 → 평가진행 → 결과발표 (약 20영업일 소요)



* 발표평가는 서비스 품질의 적절성에 대한 정성평가로 진행

** 수행기관은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 플랫폼 내 메뉴판 서비스 등록

5. 신청 시 유의사항

- ① 기존 수행기관은 '25년 사업기간 개편에 따라 수행기관 자격 반드시 확인
 ※ 협약만료 일자 상관없이 선정년도로부터 2개년 사업 수행

예 시	① '23.06.02(선정통보) → '23년, '24년 사업수행, 25년 신규신청 필요 ② '24.05.26(선정통보) → '24년, '25년 사업수행, 26년 신규신청 필요 ③ '24.12월 신청, '25.01.10(선정통보) → '24년, '25년 사업수행, 26년 신규신청 필요
----------------	------------------------------------------------------------------------------------------------------------------------------------------------------------------------------------

- ② 수행기관 신청은 분야별 접수를 받으며, 다수 분야를 신청할 경우 분야별 신청서를 개별로 작성 필요(수행계획, 유사실적, 참여인력 개별 작성)
- ③ 컨설팅은 최대 3개, 마케팅·기술지원은 각 최대 4개까지 신청
- ④ '25년 선정된 수행기관은 '25년, '26년 사업 수행하며 자격유지기간은 '26.12.31임. 프로그램 추가 선정시에도 자격기간은 동일

예 시	① '25.3월 컨설팅-경영기술전략 및 마케팅-디자인 개선으로 선정 → 자격기간 : 선정일로부터~ '26.12.31 ② '25.5월 마케팅-광고지원으로 추가선정 → 자격기간 : 선정일로부터~ '26.12.31
----------------	---------------------------------------------------------------------------------------------------------------------------------------------

- ⑤ 유사 과제 수행실적 관련 서류가 없거나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운영지침 제15조 3항, 6항에 따라 신청제외 및 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
- ⑥ 수행기관 신청기업이 제출한 일체의 서류 중 허위기재 확인 또는 부정행위 적발 시 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발생 가능
- ⑦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평가 및 수요기업 만족도 조사 등에 대한 수행기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수행기관의 경우 참여제한 가능
- * 협약 기간 중 수행실적이 없거나 성과평가 하위10%의 경우 수행기관 등록 취소 가능
- ⑧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수행 중이거나 완료된 이후라도 수행기관 자격 박탈, 과제 취소 및 환수조치
- ⑨ 공고에 없는 내용은 관련 지침을 따르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수행기관에게 있음

6. 문의처

○ 수행기관 평가 사무국 : (주)트리피 (☎ 02-2038-6724)

- 혁신플랫폼 홈페이지(www.mssmiv.com) 내 '문의하기' 활용

[2025년 혁신바우처 운영기관 안내]

운영기관	분야	업무내용	연락처
한국스마트 컨설팅협회	컨설팅, 마케팅 (브랜드지원,광고지원)	수요·수행기관 교육	02-2088-8622
		3자계약·완료점검 등	02-2088-6392
		계약변경·중간점검 등	02-2088-1509
		컨설팅 수행 전반	02-2135-761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8길14-6 동성빌딩 9층			
한국경영 기술지도사회	컨설팅, 마케팅 (브랜드지원,광고지원)	수행기관 교육·서비스등록	02-6205-8123
		3자계약·중간점검 등	02-6205-8121
		컨설팅 수행전반·완료점검	02-569-8876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203 5층	
한국산학연 협회	기술지원, 마케팅 (디자인개선, 홍보물제작)	3자계약·매칭·교육 등	044-410-3333
		수행기관 교육 및 관리	044-410-3337
		규정개정 등	044-410-3331
		중간 및 완료점검	044-410-3332
		세종시 집현중앙7로6, 세종대명벨리온 B동403호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기술지원, 마케팅 (디자인개선, 홍보물제작)	서비스매칭 및 관리·점검	02-2230-2164
		수행기관 관리·평가	02-2230-2157
		사업운영·관리	02-2230-2112
		사전교육·역량강화교육	02-2230-2155
		서울시 종로구 종로413, 동보빌딩 2층 208호,3층308호	

붙임 1

수행기관 신청서류(운영지침 별지 제9호~제14호)

[제출서류 ①] 수행기관 신청서 [온라인작성같음]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기 업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지 역		설 립 일 자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대표자	휴대전화
	팩 스		이 메 일
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이메일)

기업 현황	종업원 수 (4대보험 가입자)	참여인력 수 (명)
	자산총계(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자본총계(백만원)	당기순이익(백만원)
	부채총계(백만원)	부채비율 (%)

지원 분야 및 프로그램	컨 설 팅		<input type="checkbox"/> 경영기술전략	<input type="checkbox"/> 탄소중립경영혁신	
			<input type="checkbox"/> 중대재해예방	<input type="checkbox"/> 시스템 및 시설구축	
	기 술 지 원	일반/ 중대재해	<input type="checkbox"/> AX·DX추진전략	<input type="checkbox"/> 시제품 제작	
			<input type="checkbox"/> IP기술사업화	<input type="checkbox"/> 제품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탄소	<input type="checkbox"/> 시제품 제작	<input type="checkbox"/> 에너지효율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input type="checkbox"/> 친환경·저탄소 제품시험		<input type="checkbox"/>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마 케 팅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개선	<input type="checkbox"/> 브랜드 지원	<input type="checkbox"/> 홍보물 제작	<input type="checkbox"/> 광고 지원

위와 같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관 등록을 신청하며, 상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과제책임자)의 메일링, SMS수신서비스에 동의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기업명

대표(이사)

(인)

[제출서류 ②] 수행기관 서비스 수행계획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서비스 수행계획

※ 신청 프로그램별 개별 작성 필수(EX.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신청 시 각각 작성)

서비스(사업) 분야

지원분야 및 프로그램	컨설팅		<input type="checkbox"/> 경영기술전략		<input type="checkbox"/> 탄소중립경영혁신	
			<input type="checkbox"/> 중대재해예방			
	기술 지원	일반/ 중대재해	<input type="checkbox"/> AX-DX추진전략	<input type="checkbox"/> 시제품 제작	<input type="checkbox"/> 시스템 및 시설구축	
			<input type="checkbox"/> IP기술사업화		<input type="checkbox"/> 제품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탄소	<input type="checkbox"/> 시제품 제작		<input type="checkbox"/> 에너지효율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마케팅		<input type="checkbox"/> 친환경·저탄소 제품시험		<input type="checkbox"/>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개선	<input type="checkbox"/> 브랜드 지원	<input type="checkbox"/> 홍보물 제작	<input type="checkbox"/> 광고 지원	

업종	<i>헬스케어 서비스업</i>	세부업종	<i>디지털 헬스/건강관리 앱</i>
서비스(기술) 사업분야	<i>환자 맞춤형 상담 알고리즘 건강데이터 분석 사용자 앱 운영</i>		

수행실적(최근 3개년, 최근 날짜순으로 작성)

No	기업(기관)명	기간	수행내용(계약명)	수행금액
1		yy.mm.dd~yy.mm.dd		천원
2		. . . ~ . . .		천원
3		. . . ~ . . .		천원
4		. . . ~ . . .		천원
합 계				천원

참여인력 현황(각 인력별 참여인력 이력사항 작성필요)

No	성명	직급	전문분야	최종학위/자격증	경력
1					
2					
3					
4					

□ AI 활용역량 및 실적(최근 3개년, 최근 날짜순으로 작성) - 보유시 작성

보유 AI역량				
활용 내용				
수요업체명	기간	수행내용	수행금액	비고
	yy.mm.dd~yy.mm.dd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합계			천원	

[제출서류 ③] 수행기관 참여인력 이력사항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비스 수행참여 전체 인력에 대하여 개별 작성

사 진	성 명		직 위 (직 책)	
	수 행 예 정 프 로 그 램		담 당 업 무	
	주 소			
	E - M a i l		휴 대 폰	

	기 간	학 교 명	학 과 명	전 공	학 위
학력사항 [대학원 이상 학력작성]	`00.00.00~`00.00.00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 당 업 무	비 고
경력 (최근 경력부터 작성)	`00.00.00~`00.00.00				

	기 간	업 체 명	수 행 내 용	수 행 금 액	비 고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00.00.00~`00.00.00				

	발 급 일 자	자 격 증 명	발 급 번 호	발 급 기 관	비 고
자격증	`00.00.00~`00.00.00				

* 경력지수의 인정은 수행기관 신청 전에 신청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상근 직원에 한함.

[제출서류 ④] 보안각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활용동의서(수행인력)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보안각서(수행기관)

※ 서비스 수행참여 전체인력 작성

	수행인력 성명	생년월일	소속 부서	서명
1				
2				
3				
4				
5				

상기자는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참여하여 이를 통하여 지득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동 사업의 전후를 막론하고 기밀을 엄수할 것과 만약 이를 위반 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수행기관 :

대표자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중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수행인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중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등록, 협약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전문분야(건설링, 기술지원, 마케팅), 참여이력(사업년도, 표준산업분류, 참여기간, 참여내용(수행과제정보), 성과이력(사업년도, 사업구분, 평가일, 평가등급, 경력사항(학력사항, 근무경력, 자격증,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실적))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협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과의 거래 관계가 설정, 유지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요기업 및 주관기관, 관리기관 및 운영기관, 중소기업
제공받는 자의 목적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및 공공기관 정책자료 활용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전문분야(건설링, 기술지원, 마케팅), 참여이력(사업년도, 표준산업분류, 참여기간, 참여내용(수행과제정보 및 만족도), 성과이력(사업년도, 사업구분, 평가일, 평가등급, 경력사항(학력사항, 근무경력, 자격증, 사업실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협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선택적 정보(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제 공 동 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상기 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정한 관리기관 및 운영기관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동의자 성명 : (인)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윤리강령 서약서

당사는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으로서 지식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육성의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여 직무수행에 있어 아래의 윤리강령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사업비를 투명하게 집행한다.
- 동 사업의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중소기업에게 전문화된 최상의 서비스를 친절히 제공한다.
- 수행기관으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며,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법률과 사회적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중소기업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중소기업에 봉사하는 자세로 직무에 임한다.

0000년 00월 00일

수행기관 : (인)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중

본인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분야별 운영기관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참여를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중소기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금액 등)를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 혁신바우처 플랫폼(http://mssmiv.com) 및 중소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개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턴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 공동진단기관, 사전부실예방위원회), 중소기업부 등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제공·조회 목적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참여를 위한 자료, 중소기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보증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등) ·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소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부에 등록된 창투회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등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운영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연대보증인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 공동진단기관,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용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운영기관 : 중소기업혁신바우처 사업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연대보증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대출계약 체결여부 판단 및 유지, 관리, 이행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 공동진단기관, 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기업진흥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중소기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용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운영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 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자료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 공동진단기관,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기업진흥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자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연대보증인 등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 연월일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중진공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부동산정보(지적전산정보자료 등),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0000년 00월 00일

기업명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01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히 숙지함은 물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진공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대표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중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기업진단, 공동진단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관련 상담, 참여, 선정을 위한 자료, 연계지원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자료, 고객만족도 조사,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성별,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직위),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신용능력정보(채무, 납세실적), 기타 신용정보(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정보), 사업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생년월일, 학력, 수상경력, 자격증, 실적증명)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조건에 일부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선택적 정보 :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선정을 위한 신용도 판단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거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이용할 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보유·이용 기간	위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대표(이사)의 신용도 판단 및 지원 결정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신청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3.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 NICE신용평가정보(주)
제공·조회 목적	금융거래,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의 판단을 위한 자료,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회회사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식별정보(성명),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신용능력정보(채무, 납세실적), 기타 신용정보(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에 기재된 정보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4.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NICE신용평가정보(주)
제공받는 자의 목적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식별정보(성명)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5.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중진공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 성명, 성별,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직위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정책지원내역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0000년 00월 00일

기업명		성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010-0000-0000
대표주민번호	-	이메일	

-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진공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 * 공동·각자 대표의 경우, 공동대표는 모두 작성 및 제출 / 각자대표는 1명만 작성 및 제출 가능합니다.

사 업 실 적 증 명 서

관련실적 해당분야 (중복가능)	컨설팅		<input type="checkbox"/> 경영기술전략 <input type="checkbox"/> 탄소중립 경영혁신 <input type="checkbox"/> 중대재해예방			
	기술 지원	<input type="checkbox"/> 일반/ 중대재해	<input type="checkbox"/> AX·DX추진전략			
			<input type="checkbox"/> 시제품제작	<input type="checkbox"/> 시스템 및 시설구축		
		<input type="checkbox"/> IP기술사업화	<input type="checkbox"/> 제품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input type="checkbox"/> 탄소	<input type="checkbox"/> 시제품제작		<input type="checkbox"/> 에너지효율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input type="checkbox"/> 친환경·저탄소 제품시험		<input type="checkbox"/>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마케팅		<input type="checkbox"/> 디자인개선 <input type="checkbox"/> 브랜드 지원 <input type="checkbox"/> 홍보물 제작 <input type="checkbox"/> 광고 지원				
신 청 인 (수행기관)	기 업 명 :		(전화번호 :)			
	영업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업(용역)명					
	사업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규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 기업/기관 (거래처)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업 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 :)			
	발급부서 :		담당자 :			
※ 유의사항						
1. 지정 양식의 '사업실적증명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계약처, 금액, 기간, 내용 등이 포함된 계약서 사본과 그리고 계약금액 전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동시 제출시 함께 인정(간이세금계산서 불인정) (상기 대체 제출원칙은 본 제출원칙(사업실적증명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동시제출)과 동일적용)						
2. 사업(용역)이행실적은 용역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사업실적증명서의 증명서 발급기관의 날인이 편집/조작된 경우 사업실적으로 불인정하며, 허위로 실적을 제출 시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사업 수행기관 참가자격을 제한함						

[제출서류 ⑧] 수요의향서(수요기업이 작성)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요의향서

수요기업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수행기관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해당분야 (중복가능)	컨설팅		<input type="checkbox"/> 경영기술전략 <input type="checkbox"/> 중대재해예방 <input type="checkbox"/> 탄소중립 경영혁신
	기술 지원	일반/ 중대재해	<input type="checkbox"/> AX·DX 추진전략 <input type="checkbox"/> 시제품제작
			<input type="checkbox"/> 시스템 및 시설구축 <input type="checkbox"/> IP기술사업화
			<input type="checkbox"/> 제품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탄소	<input type="checkbox"/> 시제품제작 <input type="checkbox"/> 에너지효율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input type="checkbox"/> 친환경 저탄소 관련 인증 <input type="checkbox"/> 친환경 저탄소 제품시험	
	마케팅		<input type="checkbox"/> 디자인개선 <input type="checkbox"/> 브랜드 지원 <input type="checkbox"/> 홍보물 제작 <input type="checkbox"/> 광고 지원

당사는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수요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수행기관과의 서비스 내용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수행 기관과의 3자 계약 체결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수요기업명 (주)00000 대표(이사): (인)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서면평가표

□ **신규 수행기관 선정기준**(합계 70점 이상 득점時 절대평가로 발표평가 대상선정)

구분	요소	세부 평가항목	인정기준 및 증빙자료 요약	배점	
서비스 품질의 적절성 (70)	전문성	참여인력의 경력지수	* 상근인력만 인정 * 증빙서류 : 참여인력의 해당되는 경력 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 재직(퇴직·경력) 증명) 참여인력이력사항 *공공기관 등 공직자의 경우 "재직(경력)증명서"로 대체 가능	20	70
		관련분야 업력	* 증빙서류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명원	20	
	수행역량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	* 제출서류 : 서비스 수행계획, 사업실적증명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내용 및 금액 등 동일해야 인정)	15	
		유사과제 수행실적 금액	* 제출서류 : 서비스 수행계획, 사업실적증명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내용 및 금액 등 동일해야 인정)	15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30)	조직 규모	인력 규모	* 상근인력만 인정 * 제출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15	30
	재정 안정성	매출액	* 제출서류 : 결산공고된 국세청 표준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5	
정부 정책의 부합성 (-10)	부정 행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제재이력	*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10	감점 지표

* 유사 과제 수행실적 관련 서류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운영지침 제15조 3항, 6항에 따라 신청 및 선정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별도 보완요청 없음)

*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직인 및 날인된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원본을 반드시 분야별 운영기관 담당자에게 오프라인(우편 송부)으로 제출하여야 함(多분야 신청 시 각각 제출必, 주소는 모집공고 참조)

□ 지표별 평가서류 및 평점기준

평가관점	서비스 품질의 적절성	배점	20점		
평가지표	인력의 전문성				
지표의미	· 참여인력의 관련분야 경력에 대한 확인을 통해 해당 기관이 각 프로그램별 수행기관으로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인력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지 평가함.				
분석방법	제출자료에 따른 정량 평가				
※ 평가 항목					
구분	평가 내용	세부 배점			
①	참여인력의 경력지수	20점			
※ 측정산식					
① 참여인력 경력지수란, 본 사업에 투입하고자 하는 참여인력의 경력을 지수화한 것을 의미하며, 전체 참여인력의 경력지수 합계를 기준으로 점수 부여					
* 참여인력 경력지수는 수행기관이 신청한 분야와 관련된 경력에 한하며, 하단의 표를 기준으로 함					
자격조건		경력지수			
- 해당분야경력 12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및 해당분야경력 8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관련 분야 전문자격* 취득 및 해당분야경력 4년 이상 - (마케팅분야) 마케팅 전문자격* 취득 및 해당분야경력 10년 이상		3			
- 해당분야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및 해당분야경력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관련 분야 전문자격 취득자 - (마케팅분야) 마케팅 전문자격* 취득 및 해당분야경력 6년 이상		2			
- 해당분야경력 3년 이상 - (마케팅분야) 마케팅 전문자격* 취득자		1			
* 경력지수의 인정은 수행기관 신청 전에 신청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상근직원에게 한하며, 개인별 신청일(포함)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을 포함·제출하여 경력 및 학력이 확인가능한 자에 한하여 인정하며, '학위(졸업)증명서', '전문자격증'은 사본으로 확인가능한 자에 한하여 인정함(1 개인별 학위(졸업)증명서 또는 '전문자격증'과 함께 2 개인별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첨부 필요)					
* 다만,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발급이 어려운 참여인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대체 가능					
* 공공기관 등 공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로 대체 가능					
* 분야 무관 전문자격은 기술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법무사, 기능장, 경영기술지도사 에 한하며 해당 자격증 필수 제출할 시에만 경력지수 인정					
* 마케팅분야 전문자격은 GTQ(1급),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웹디자인 기능사에 한하며 해당 자격증 필수 제출할 시에만 경력지수 인정					
* '학위(졸업)증명서'는 내용 중 '성명', '생년월일', '소속(대학, 학과, 부 등)', 학위명, 졸업일/학위수여일, 학위등록번호, 발급기관 날인이 확인가능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함. 또한 해외학위 취득자의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사본에 대학명, 학위 및 전공내역, 발급일, 발급기관명 등 중요 확인내용이 있어야 하며, 영어 외 언어일 경우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할 시에만 인정					
* 중대재해 컨설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서 제출 시 전문성 최고점 부여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의 경우, 산업부, 환경부로부터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환경컨설팅회사로 지정받은 확인서 제출 시 기관기업은 인력의 전문성 최고점 부여					
※ 평점 부여기준					
신청기관에서 본 사업에 투입하는 참여인력의 경력지수를 합을 측정하여 구간에 따라 평점을 부여함.					
구분	6 미만	6 이상 ~ 9 미만	9 이상 ~ 12 미만	12 이상 ~ 15 미만	15 이상
배점	12점	14점	16점	18점	20점

평가관점	서비스 품질의 적절성	배점	50점
평가지표	수행역량		
지표의미	· 관련분야 업력, 유사과제 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대한 확인을 통해 해당기관이 프로그램별 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수행 경험을 지니고 있는지 평가함.		
분석방법	제출자료에 따른 정량 평가		

※ 평가 항목

구분	평가 내용	세부 배점
①	관련분야 업력	20점
②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	15점
③	유사과제 수행실적 금액	15점

※ 측정산식

① [관련분야 업력 = 관련분야 서비스 시작 시점부터의 경과 연수]

- * 관련분야 업력은 '관련 업태 및 종목이 등록된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경과한 기간을 통해 산정함.
-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기타 서류첨부 란에 '포괄양도양수계약서(별도 양식 없음)', '폐업 사실증명(국세청)' 제출 시 인정
- * 법인전환 외 단순 사업자명 변경 시 '기타'란에 1)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 및 2)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모두 제출 시 인정)

②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의 합]

- *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는 수행기관이 신청한 분야와 유사한 분야의 과제 수행 건수를 의미하며 **최근 3년 내(신청일 포함) 시작 및 완료된 수행실적 건수의 합으로 산정함.**
- * 유사과제 수행실적의 인정 기준은 1)공고문에 제시된 '사업실적증명서' 양식에 맞게 제출되어 확인 가능하며 거래처의 직인이 포함된 서류와 계약금액 전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동시 제출 시 인정 2)나라장터 발급 사업실적증명서(반드시 QR코드 포함된 발급분만)에 한하여 인정 3)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실적증명서의 경우 인정함
- * 지정 양식의 '사업실적증명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3)계약처, 금액, 기간, 내용 등이 포함된 계약서와 계약금액 전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동시 제출 시 인정함.
- *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계약서 금액과 (전자)세금계산서 금액이 동일해야만 사업실적 인정** (상기 대체 제출원칙은 본 제출원칙과 동일적용)

구분	필수기재항목
수행기관	기업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업날인
사업(용역)이행 실적내용	사업(용역)내용, 계약기간, 계약금액(공동계약 시 비율 표시)
실적 대상 기관(기업)	기업(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기관날인

- *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 제출 가능한 기업 설립 이후의 실적건수 합으로 계산
-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포괄양도양수계약서(별도 양식 없음)', '폐업사실증명(국세청)' 제출시 인정(법인전환 외 단순 사업자명 변경일 시 '기타'란에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 및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모두 제출 시 인정)
- * IP 획득지원의 경우, IP 분쟁 승소실적 5건 이상 보유시 수행실적, 수행금액 최고점 부여
-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협업컨설팅을 통해 해당 협업체가 중소기업부 협업승인 완료된 건에 한하여 실적 인정(최근 3년간('22, '23, '24) 실적 및 협업기업선정확인서 제출 확인)
- * 중대재해 컨설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서 제출 시 유사과제 수행실적, 수행금액 서류 생략 가능(최고점 부여)
-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의 경우 탄소중립수준진단, 에너지 효율화, 온실가스 감축 실적 건에 한하여 인정하며, 산업부, 환경부로부터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환경컨설팅회사로 지정받은 확인서 제출 시 기관·기업은 유사과제 수행실적, 수행금액 서류 생략 가능(최고점부여)*

* 시스템 의 경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실적 제출 시 '협약서+참여완료 확인서'도 인정

③ [유사과제 수행실적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과제 수행실적 금액의 합]

- * 유사과제 수행실적 금액은 수행기관이 신청한 분야와 유사한 분야의 과제 수행 금액을 의미하며 최근 3년 내(신청일 포함) 시작 및 완료된 수행실적 금액의 합으로 산정함.
- * 유사과제 수행실적의 인정 기준은 1)공고문에 제시된 '사업실적증명서' 양식에 맞게 제출되어 확인 가능하며 거래처의 직인이 포함된 서류와 계약금액 전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동시 제출 시 인정 2)나라장터 발급 사업실적증명서(반드시 QR코드 포함된 발급분만)에 한하여 인정 3)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실적증명서의 경우 인정함
- * 지정 양식의 '사업실적증명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3)계약처, 금액, 기간, 내용 등이 포함된 계약서와 계약금액 전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동시 제출 시 인정함.
- *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계약서 금액과 (전자)세금계산서 금액이 동일해야만 사업실적 인정** (상기 대체 제출원칙은 본 제출원칙과 동일적용)
- * **마케팅 분야 기간별 자동 연장(갱신)되는 기간제 홍보 마케팅 계약의 경우 전체를 단일 건으로 인정**

구분	필수기재항목
수행기관	기업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업날인
사업(용역)이행 실적내용	사업(용역)내용, 계약기간, 계약금액(공동계약 시 비율 표시)
실적 대상 기관(기업)	기업(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기관날인

- * 업력이 3년 미만의 경우, 제출 가능한 기업 설립 이후의 실적건수 금액의 합으로 계산
-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포괄양도양수계약서(별도 양식 없음)', '폐업사실증명(국세청)' 제출시 인정(법인전환 외 단순 사업자명 변경일 시 '기타'란에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 및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모두 제출 시 인정)
-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협업컨설팅을 통해 해당 협업체가 중소벤처기업부 협업승인 완료된 건에 한하여 실적 인정(최근 3년간('22, '23, '24) 실적 및 협업기업선정확인서 제출 확인)
- * 중대재해 컨설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서 제출 시 유사과제 수행실적, 수행금액 서류 생략 가능(최고점 부여)
-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의 경우 탄소중립수준진단, 에너지 효율화, 온실가스 감축 실적 건에 한하여 인정하며, 산업부, 환경부로부터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환경컨설팅회사로 지정받은 확인서 제출 시 기관.기업은 유사과제 수행실적, 수행금액 서류 생략 가능(최고점부여)
- * **시스템 및 시설구축의 경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실적 제출 시 '협약서+참여완료 확인서'도 인정**

※ **평점 부여기준**

관련분야 업력,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 유사과제 수행실적 금액을 측정하여 구간에 따라 평점을 부여함.

관련 분야 업력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배점	4점	8점	12점	16점	20점

***컨설팅, 마케팅분야**

유사과제 수행실적	1건 이상 ~ 6건 미만	6건 이상 ~ 9건 미만	9건 이상 ~ 12건 미만	12건 이상 ~ 15건 미만	15건 이상
유사과제 수행금액	1억 미만	1억 이상 ~ 1.5억 미만	1.5억 이상 ~ 2.5억 미만	2.5억 이상 ~ 3억 미만	3억 이상
배점	3점	6점	9점	12점	15점

* 마케팅 분야 유사과제 수행 인정 건수 최소 금액은 건수 당 100만 원(vat포함)으로 함

* **기술지원분야**

유사과제 수행실적	1건	2건 이상~ 5건 미만	5건 이상~ 10건 미만	10건 이상~ 15건 미만	15건 이상
유사과제 수행금액	천만원 미만	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	1억 이상~ 4억 미만	4억 이상
배점	6점	8점	10점	12점	15점

* 유사수행실적은 별지 제1호 서비스 수행계획과 사업실적증명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유사과제 수행실적 및 금액을 인정함

* 2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지원 시 유사수행실적의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별 중복 인정 가능 (단 유사 수행내용을 포함하여야함)하며, **지원프로그램 미표기 시 인정 불가**

평가관점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배점	15점		
평가지표	인력규모				
지표의미	· 인력규모에 대한 확인을 통해 해당기관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조직규모를 지니고 있는지 평가함.				
분석방법	제출자료에 따른 정량 평가				
※ 평가 항목					
구분		평가 내용		세부 배점	
①		인력 규모		15점	
※ 측정산식					
① [인력규모 = 수행업체의 상근인력 수]					
* 인력규모는 수행기관의 상근인력 수를 의미함.					
* 인력규모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기재된 인력의 수로 산정하며, 신청일(포함)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한하여 인정함.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기재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불가)					
* 단, 300인 초과 사업장으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이 어려울 경우 신청일 기준 발급가능한 가장 최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인정 (A01코드의 인원으로 평점 부여)					
** 법인일 경우, 법인용으로 제출					
평점 부여기준					
인력규모를 측정하여 구간에 따라 평점을 부여함.					
인력규모	6명 미만	6명 이상 ~ 9명 미만	9명 이상 ~ 12명 미만	12명 이상 ~ 15명 미만	15명 이상
배점	6점	8점	10점	12점	15점

평가관점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배점	15점		
평가지표	재정 안정성				
지표의미	· 매출액,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확인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재정 안정성을 지니고 있는지 평가함.				
분석방법	제출자료에 따른 정량 평가				
※ 평가 항목					
구분		평가 내용		세부 배점	
①		매출액		15점	
* 설립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제출 가능한 연도분 표준재무제표증명만 제출(1년 또는 2년간 평균으로 산정)하며, 3년 이내 법인 전환한 경우, 이전 사업자의 해당연도 재무제표증명원도 포함하여 제출 (단, 폐업사실증명원 및 포괄양수양도계약서 제출 필요)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기타 서류첨부 란에 '포괄양도양수계약서(별도 양식 없음)', '폐업사실증명(국세청)' 제출 시 인정					
* 법인전환 외 단순 사업자명 변경 시 '기타'란에 1)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 및 2)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모두 제출 시 인정					

※ **측정산식**

- * '25년 사업 수행기관의 경우, 최근 3년('22-'24년) 표준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
단, '25년 결산이전(5월)까지는 ('21-'23년) 표준재무제표로 대체 가능
- *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기업의 경우 발급가능한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시 인정
- * 첨부 증빙 미제출(누락) 연도의 경우, 매출액은 '0'으로 산정되며 유동비율, 부채비율의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정확한 산정이 불가하여 최하점 부여
- * 간편장부대상자 및 비영리법인 등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이 어려운 기업일 경우 혹은 금융/보험/증권업 법인 등 기업일 경우(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은 가능하나 평가항목 확인이 어려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거래처매출합계표** 제출 시 인정

① **[매출액 =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 * 최근 3년('21~'23년) 매출액 평균을 통해 산정하며, 매출액은 결산공고된 국세청(홈택스) 표준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통해 확인된 값에 한하여 인정함

※ **평점 부여기준**

매출액,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측정하여 구간에 따라 평점을 부여함.

매출액	1억 미만	1억 이상 ~ 3억 미만	3억 이상 ~ 9억 미만	9억 이상 ~ 15억 미만	15억 이상
배점	6점	8점	10점	12점	15점

평가관점	정부정책의 부합성	감점 범위	-10 점
평가지표	부정행위		
지표의미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서 제재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은 감점을 부여함.		
분석방법	제출자료에 따른 정량 평가		

※ **평가 항목**

구분	평가 내용	감점 범위
①	동사업 부정행위심의위원회 제재조치 기업	-10점

※ **세부내용**

① **[부정행위 제재조치 기업]**

-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서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10점을 부여함.**
- * 징계수위와 무관하게 제재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동일하게 -10점을 부여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발표평가표

□ 신규 수행기관 선정기준(합계 70점 이상 득점時 절대평가로 선정)

구분	요소	세부 평가항목	평가방향 및 기준	배점	
서비스 품질의 적절성 (100)	전문성	참여인력의 과업수행역량	사업책임자의 해당 참여 분야 및 프로그램 수행 역량에 대한 기술 이해도, 참여인력의 전반적인 경력 및 수행 역량 평가 * 상근인력만 인정	30	100
	수행 역량	관련 프로그램 숙련도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관련분야 업력을 고려, 해당 업체의 참여 프로그램별 기술적 숙련도 평가	30	
		유사과제 수행실적 경험 기반 노하우	참여 프로그램별 유사과제 수행 경험 횟수에 기반한 노하우 평가 * 제출서류 : 서비스 수행계획, 사업실적증명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내용 및 금액 등 동일해야 인정) * 수행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검증	20	
		유사과제 수행실적 규모 기반 노하우	참여 프로그램별 유사과제 수행 규모별 경험 에 기반한 노하우 평가 * 제출서류 : 서비스 수행계획, 사업실적증명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내용 및 금액 등 동일해야 인정) *수행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검증	20	

* 작성한 사업수행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비스 품질의 적절성에 대하여 역량을 검증하는 질의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서비스 수행역량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진행

평가관점	서비스 품질의 적절성	배점	30점
평가지표	인력의 전문성		
지표의미	· 참여인력의 관련분야 경력에 대한 확인을 통해 해당 기관이 각 프로그램별 수행기관으로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인력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지와 사업 대표자가 이를 숙지하고 적절히 활용하는지 평가함.		
분석방법	제출자료에 따른 정량 평가를 기반으로 사업책임자의 인력활용 능력을 평가		

※ 평가 항목

구분	평가 내용	세부 배점
①	참여인력의 과업 수행역량	30점

※ 서면평가 측정산식(참고)

① 참여인력 경력지수란, 본 사업에 투입하고자 하는 참여인력의 경력을 지수화한 것을 의미하며, 전체 참여인력의 경력지수 합계를 기준으로 점수 부여

* 참여인력 경력지수는 수행기관이 신청한 분야와 관련된 경력에 한하며, 하단의 표를 기준으로 함

자격조건	경력지수
- 해당분야경력 12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및 해당분야경력 8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관련 분야 전문자격* 취득 및 해당분야경력 4년 이상 - (마케팅분야) 마케팅 전문자격* 취득 및 해당분야경력 10년 이상	3
- 해당분야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및 해당분야경력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관련 분야 전문자격 취득자 - (마케팅분야) 마케팅 전문자격* 취득 및 해당분야경력 6년 이상	2
- 해당분야경력 3년 이상 - (마케팅분야) 마케팅 전문자격* 취득자	1

* 경력지수의 인정은 수행기관 신청 전에 신청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상근직원에게 한하며, **개인별 신청일(포함)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을 포함·제출하여** 경력 및 학력이 확인가능한 자에 한하여 인정하며, '학위(졸업)증명서', '전문자격증'은 사본으로 확인가능한 자에 한하여 인정함(**1 개인별 학위(졸업) 증명서 또는 '전문자격증'과 함께 2 개인별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첨부 필요**)

* 다만,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발급이 어려운 참여인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대체 가능

* 공공기관 등 공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로 대체 가능

* 분야 무관 전문자격은 **기술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법무사, 기능장, 경영기술지도사**에 한하며 **해당 자격증 필수 제출할 시에만 경력지수 인정**

* 마케팅분야 전문자격은 GTQ(1급),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웹디자인 기능사에 한하며 해당 자격증 필수 제출할 시에만 경력지수 인정

* '학위(졸업)증명서'는 내용 중 '성명', '생년월일', '소속(대학, 학과, 부 등)', 학위명, 졸업일/학위수여일, 학위등록번호, 발급기관 날인이 확인가능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함. 또한 해외학위 취득자의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사본에 대학명, 학위 및 전공내역, 발급일, 발급기관명 등 중요 확인내용이 있어야 하며, **영어 외 언어일 경우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할 시에만 인정**

* 중대재해 컨설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서 제출 시 전문성 최고점 부여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의 경우, 산업부, 환경부로부터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환경컨설팅회사로 지정받은 확인서 제출 시 기관·기업은 인력의 전문성 최고점 부여

※ 발표평가 평점 부여기준

신청기관에서 본 사업에 투입하는 참여인력에 대한 프로그램 수행 역량 검증을 위한 질의를 실시하여 기술 이해도와 참여인력의 수행 역량 판단에 따라 평점 부여

구분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배점	18점	21점	24점	27점	30점

□ 지표별 평가서류 및 평점기준

평가관점	서비스 품질의 적절성	배점	70점
평가지표	수행역량		
지표의미	· 관련분야 업력, 유사과제 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대한 확인을 통해 해당기관이 프로그램별 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수행 경험을 지니고 있는지 평가함.		
분석방법	제출자료에 따른 정량 평가		

※ 평가 항목

구분	평가 내용	세부 배점
①	관련 프로그램 숙련도	30점
②	유사과제 수행실적 경험 기반 노하우	20점
③	유사과제 수행실적 규모 기반 노하우	20점

※ 서면평가 측정산식(참고)

① [관련분야 업력 = 관련분야 서비스 시작 시점부터의 경과 년수]

- * 관련분야 업력은 '관련 업태 및 종목이 등록된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경과한 기간을 통해 산정함.
-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기타 서류첨부 란에 '포괄양도양수계약서(별도 양식 없음)', '폐업사실증명(국세청)' 제출 시 인정
- * 법인전환 외 단순 사업자명 변경 시 '기타'란에 1)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 및 2)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모두 제출 시 인정

②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의 합]

- *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는 수행기관이 신청한 분야와 유사한 분야의 과제 수행 건수를 의미하며 최근 3년 내(신청일 포함) 시작 및 완료된 수행실적 건수의 합으로 산정함.
- * 유사과제 수행실적의 인정 기준은 1)공고문에 제시된 '사업실적증명서' 양식에 맞게 제출되어 확인 가능하며 거래처의 직인이 포함된 서류와 계약금액 전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동시 제출 시 인정 또는 2)나라장터 발급 사업실적증명서(반드시 QR코드 포함된 발급분만)에 한하여 인정함
- * 지정 양식의 '사업실적증명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3)계약처, 금액, 기간, 내용 등이 포함된 계약서와 계약금액 전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동시 제출 시 인정함.
- *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계약서 금액과 (전자)세금계산서 금액이 동일해야만 사업실적 인정 (상기 대체 제출원칙은 본 제출원칙과 동일적용)

구분	필수기재항목
수행기관	기업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업날인
사업(용역)이행 실적내용	사업(용역)내용, 계약기간, 계약금액(공동계약 시 비율 표시)
실적 대상 기관(기업)	기업(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기관날인

- *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 제출 가능한 기업 설립 이후의 실적건수 합으로 계산
-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포괄양도양수계약서(별도 양식 없음)', '폐업사실증명(국세청)' 제출시 인정(법인전환 외 단순 사업자명 변경일 시 '기타'란에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 및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모두 제출 시 인정)
- * IP 획득지원의 경우, IP 분쟁 승소실적 5건 이상 보유시 수행실적, 수행금액 최고점 부여
-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협업컨설팅을 통해 해당 협업체가 중소벤처기업부 협업승인 완료된 건에 한하여 실적 인정(협업정보시스템(www.smes.go.kr/cobiz))에서 최근 3년간('22, '23, '24) 실적 확인)
- * 중대재해 컨설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서 제출 시 유사과제 수행실적, 수행금액 서류 생략 가능(최고점 부여)
-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의 경우 탄소중립수준진단, 에너지 효율화, 온실가스 감축 실적 건에 한하여 인정하며, 산업부, 환경부로부터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환경컨설팅회사로 지정받은 확인서 제출 시 기관·기업은 유사과제 수행실적, 수행금액 서류 생략 가능(최고점부여)*
- * 시스템 의 경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실적 제출 시 '협약서+참여완료 확인서'도 인정

③ [유사과제 수행실적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과제 수행실적 금액의 합]

- * 유사과제 수행실적 금액은 수행기관이 신청한 분야와 유사한 분야의 과제 수행 금액을 의미하며 최근 3년 내(신청일 포함) 시작 및 완료된 수행실적 금액의 합으로 산정함.
- * 유사과제 수행실적의 인정 기준은 1)공고문에 제시된 '사업실적증명서' 양식에 맞게 제출되어 확인 가능하며 거래처의 직인이 포함된 서류와 계약금액 전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동시 제출 시 인정 또는 2)나라장터 발급 사업실적증명서(반드시 QR코드 포함된 발급분만)에 한하여 인정함
- * 지정 양식의 '사업실적증명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3)계약처, 금액, 기간, 내용 등이 포함된 계약서와 계약금액 전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동시 제출 시 인정함.
- *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계약서 금액과 (전자)세금계산서 금액이 동일해야만 사업실적 인정** (상기 대체 제출원칙은 본 제출원칙과 동일적용)
- * **마케팅 분야 기간별 자동 연장(갱신)되는 기간제 홍보 마케팅 계약의 경우 전체를 단일 건으로 인정**

구분	필수기재항목
수행기관	기업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업날인
사업(용역)이행 실적내용	사업(용역)내용, 계약기간, 계약금액(공동계약 시 비율 표시)
실적 대상 기관(기업)	기업(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기관날인

- * 업력이 3년 미만의 경우, 제출 가능한 기업 설립 이후의 실적건수 금액의 합으로 계산
-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포괄양도양수계약서(별도 양식 없음)', '폐업사실증명(국세청)' 제출시 인정(법인전환 외 단순 사업자명 변경일 시 '기타'란에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 및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모두 제출 시 인정)
-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협업컨설팅을 통해 해당 협업체가 중소벤처기업부 협업승인 완료된 건에 한하여 실적 인정(협업정보시스템(www.smes.go.kr/cobiz)에서 최근 3년간('22년~'24년) 실적 확인)
- * 중대재해 컨설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서 제출 시 유사과제 수행실적, 수행금액 서류 생략 가능(최고점 부여)
-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의 경우 탄소중립수진단, 에너지 효율화, 온실가스 감축 실적 건에 한하여 인정하며, 산업부, 환경부로부터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환경컨설팅회사로 지정받은 확인서 제출 시 기관-기업은 유사과제 수행실적, 수행금액 서류 생략 가능(최고점부여)
- * **시스템 및 시설구축의 경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실적 제출 시 '협약서+참여완료 확인서'도 인정**

※ 발표평가 평점 부여기준

관련분야 업력,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 유사과제 수행실적 금액을 기반으로 해당 기업이 신청 프로그램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숙련도, 유사과제 경험 횟수 기반 및 유사과제 경험의 규모를 기반한 충분한 역량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평점 부여

관련 프로그램 숙련도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배점	6점	12점	18점	24점	30점

*컨설팅, 마케팅분야

유사과제 수행실적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유사과제 수행금액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배점	4점	8점	12점	16점	20점

* 기술지원분야

유사과제 수행실적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유사과제 수행금액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배점	8점	11점	13점	16점	20점